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자 원 순 환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체·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‘순환자원 인정 제도’가 시행 중이나,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,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소각(燒却),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
2.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법	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---
제9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
1.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(固形物)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	1. 소각(燒却),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
2.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,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<삭 제>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	<삭 제>
가. 음식물류 폐기물, 유기성(有機性) 오니류(汚泥類) 및 동물성 잔재물(殘滓物). 다만,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(廢貝殼)은 제	

외한다.

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

다. 성토재, 복토재, 도로의 기층재·보조기층재, 채움재 등 토양·지하수·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

4.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

5.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

6. 유기성 폐기물(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)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

<삭 제>

2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 제>

료

1)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

1호에 따른 사료(이하

“사료”라 한다)

2)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

1호에 따른 비료(이하

“비료”라 한다)

3) 목재성형제품, 톱밥 등

나무제품

4)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

제품

나.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

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

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

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

따른 농업을 말한다)활동

에 직접 사용될 것

7.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

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(수출

은 제외한다)될 것. 다만, 제6

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

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.

8.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

다른 법령에서 용도, 방법, 기

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

<삭 제>

<삭 제>

<u>는 그 용도, 방법, 기준 등에 적합할 것</u> <u>9.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 입된 후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2항제4 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</u> <u>[대통령령 제31963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가목 단서는 2022년 7월 20일까지 유효함]</u>	<u><삭 제></u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49